의안번호	제3080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
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6. 3. 13.

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제3080호

제출연월일: 2026. 3. 13.
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제안이유

❍ 고성읍 순환버스 민간위탁 기간이 2026. 6. 30.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필요

❍ 고성읍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복지를 증대하기 위해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위탁 근거

가.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5조의2(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)

나.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

3. 위탁내용

❍ **위탁개요**

- 위탁 운영기간: 2026. 7. 1. ~ 2029. 6. 30.(3년)

- 위탁 운영비: 약 352,360천원 정도/1년(붙임1 참조)

- 위탁 방법: 공개 모집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(5월 중 공고 예정)

❍ 위탁내용: 읍 순환버스 운영 및 관리

❍ **운영현황: 2개노선으로 순환버스 2대 운행**

구분	기 점	주요 경유지	종 점	운행 횟수	비고
1노선 (1호차)	터미널	간이대합실 → 더조은병원 → 교육청 → 대동남산·주공 → 남산약국 → LH주공 → 중앙고 → 코아루 → CGV·탑마트	터미널	왕복 6회	
	대동남산 주공	교육청 → 파머스 → 터미널 → 철성중 → 고성중 → 중앙고 → 남산공원 → 강병원	대동남산 주공	왕복 4회	
2노선 (2호차)	터미널	터미널 → 간이대합실 → 더조은병원 → 월평·곡용 → 해수탕·신월 → 코아루·국도A → 수외마을·남산공원	터미널	왕복 6회	
	터미널	터미널 → 새시장 → 강병원 → 남산공원·수외마을 → 중앙고·코아루 → 신월·해수탕 → 곡용·월평 → 율대	율대	왕복 4회	

❍ **운영형태**: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한정면허

4. 민간위탁금 산출내역: 붙임과 같음

[붙임 1]

민간위탁금 산출 세부 내역

1 사업비 현황 : 금352,360천원 정도(민간위탁금)

2 민간위탁금(운영비)

구 분		금 액(원)	산 출 내 역(원)	비 고
합 계		**352,360,600**		
인건비	소 계	**305,265,600**		
	급 여	188,514,000	승무원(고성버스 승무원 동일) 5,236,500원×3명×12개월	상여금포함
		51,351,000	사무원(경력자) 4,279,250원×1명×12개월	
	퇴직충당금	18,000,000	승무원(3명) 6,000,000×3명	
		5,040,000	사무원(1명) 5,040,000×1명	
	연차수당	10,985,000	승무원(3명) 2,793,873×3명	
			사무원(1명) 2,603,380×1명	
	4대보험료	23,054,400	승무원 640,400×3명×12개월	
		6,721,200	사무원 560,100×1명×12개월	
	복지후생비	1,600,000	근로자의 날 선물 등 400,000×4명	
운영비	소 계	**47,095,000**		
	전기충전료	16,920,000	650,000×2대×12개월=15,600,000 전기관리대행료 110,000×12개월=1,320,000	
	타 이 어	8,480,000	230,000×6개×3회×2대=8,280,000 수선인건비 200,000	
	부 속 대	12,160,000	라이닝 55,000×8개×2회×2대+400000(수선인건비)=2,160,000 기타부속 및 수선비 10,000,000	
	차량보험료	4,935,000	대인Ⅰ 1,117,000×2대=2,234,000 대인Ⅱ 779,000×2대=1,558,000 대물 571,500×2대=1,143,000	
	승무원 근무복	1,000,000	승무원 근무복 250,000×4명	
	세무, 수수료 등	2,400,000	200,000×12월	
	청소도구 외 잡비	1,200,000	100,000×12월	

참고 **관계법령(발췌)**

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
제35조의2(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
2.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(이하 “재계약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